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of Purchase SMR Poongjeong & Hyosang - Korean

March 10, 2016

- 기 본 계 약 서
- 품질 보증 협정서
- 클레임보상협정서
- 윤리 및 행동규범

갑 : (주)에스엠알 풍정

을 :



기 본 계 약 서

목 차

| | |
|-------------------------------------|----|
| 제1조(기본원칙)..... | 3 |
|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 3 |
| 제2조의 2[계약의 변경]..... | 3 |
| 제3조(발주)..... | 3 |
| 제4조(사양서류)..... | 3 |
| 제5조(부품개발)..... | 4 |
| 제6조(단가)..... | 4 |
| 제7조(사급재의 지급)..... | 4 |
| 제8조(사급재의 소유권)..... | 5 |
| 제9조(금형등의 양도·대여)..... | 5 |
| 제10조(사급재 및 금형등의 취급)..... | 5 |
| 제11조(납기)..... | 6 |
| 제12조(납품)..... | 6 |
| 제13조(보수용 부품의 납품)..... | 6 |
| 제14조(부당반품의 금지)..... | 6 |
| 제15조(상표의 표시·포장)..... | 6 |
| 제16조(수령·검사 및 인수)..... | 6 |
| 제17조(부족분·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 7 |
| 제18조(부품의 소유권 이전)..... | 7 |
| 제19조(대금의 지급)..... | 7 |
| 제20조(부당감액의 금지)..... | 7 |
| 제21조(대금의 상계)..... | 7 |
| 제22조(품질보증)..... | 7 |
| 제23조(하자담보책임)..... | 8 |
| 제24조(제조물책임)..... | 8 |
| 제25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 8 |
| 제26조【발주부품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 | 8 |
| 제27조(산업재산권의 실시·출원)..... | 8 |
| 제28조(재하도급)..... | 9 |
| 제29조(기밀의 유지)..... | 9 |
| 제30조(주문 이외 부품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금지)..... | 9 |
| 제31조(권리·의무의 양도)..... | 9 |
|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 10 |
| 제33조(거래정지의 예고)..... | 10 |
| 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 10 |
| 제35조(손해배상의 청구)..... | 11 |
| 제36조(이의·분쟁의 해결)..... | 11 |
| 제37조(유효기간)..... | 11 |
| 제38조【지체상금】..... | 11 |

기본계약서

자동차의 부품 또는 그 부속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의 거래에 있어 (주)에스엠알 풍정(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이하 "을"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기본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기본원칙) ①거래는 상호이익의 존중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기본계약 및 개별계약) ①본 기본계약(이하 "계약"이라 하며, 하도급거래가 아닌 단순 인력 파견계약은 제외된다)은 갑과 을간의 부품의 제조하도급에 관한 기본사항을 정한 것으로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개개의 거래계약(이하 "개별계약"이라 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하며, 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준수한다.

②개별계약에는 부품의 발주 년 월 일, 품명·사양·수량 및 단가, 납기 및 납품장소, 검사의 방법 및 시기, 하도급 대금 및 그 지급방법과 지급기일 등을 기재하고 갑과 을이 기명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개별계약의 내용 중 일부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사전에 부속협정서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③납품이 빈번하여 개별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2항의 거래내용이 기재된 발주서(전산발주서 포함)를 갑이 교부함으로써 개별계약은 성립한다. 다만, 을이 발주서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거절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본 계약 및 개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⑤갑은 필요시 거래를 희망하는 신규업체에 대해 직접 제안할수 있는 현장설명회나 사이버 제안마당을 설치 ,운영할수 있다.

제2조의 2 [계약체결 방식]

① 갑은 각 호와 같이 계약체결 방식을 선택하여 체결할수 있다

1. 수의계약

입찰 등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 적당한 상대방을 임의로 선택하여 맺는 계약

2. 일반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지 않고 자유로이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3. 제한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여 경쟁에 부친 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4. 지명경쟁계약

입찰에 있어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친후 낙찰자를 결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② 갑은 물품의 중요성,거래가능상대방의 수,거래경험,전체거래금액 대비 기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1와 같이 계약방식을 선택할수 있다. 단, 업체의 특수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고

려하여 계약방식을 선택한다

제2조의 3【계약의 변경】

①갑과 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발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계약내용을 변경,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은 상호 합의하여 본 계약 및 개별계약을 기명 날인한 서면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②계약 변경 시 갑의 요구로 사양변경, 작업기간, 작업물량 등 과업내용의 변경으로 인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갑과 을은 협의에 의해 과업내용의 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합리적으로 조정 한다.

제3조(발주) 갑은 부품을 발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발주계획을 을에게 예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에 필요한 정보를 함께 제공한다.

제4조(사양서류) ①갑이 을에게 제시하는 발주부품의 사양서류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갑과 을이 협의하여 이를 추가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1. 도면·승인도 및 부품규격
2. 검사기준 및 한도견본
3. 포장지시서(포장·방진·손상방지 및 보관에 필요한 방청 등에 관한 조치사항 포함)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양서류의 내용·규격 등이 불분명하거나 의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③을은 제1항에 의한 사양서류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갑과 을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양 또는 제작방법의 변경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그 변경에 따른 구형제품의 사후처리는 협의하여 정한다.

제5조(부품개발) ①갑은 을에게 부품개발을 의뢰할 때에는 부품조달계획을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동 부품의 수령을 거부할 수 없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품개발을 의뢰 받은 때에는 소요경비를 기재한 견적서 및 개발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그의 내용을 보완 또는 조정할 수 있다.

③부품개발에 따른 견본품 또는 시제품의 제작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조정한다.

제6조(단가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부품의 단가는 수량·품질·사양·납기·대금지급방법·재료가격·노무비 또는 시가의 동향 등을 고려하고 적정한 관리비 및 이익을 가산한 합리적인 산정방식에 따라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납품장소까지의 포장비, 운임, 하역비 및 보험료 기타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③갑은 계약기간중 제1항에서 정한 단가에 포함되어 있는 품목의 가격 또는 요금의 급격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갑 또는 을은 상대방에게 단가조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상호 협의하여 다시 조정을 한다. 30일 이내 조정에 이르지 못한 경우 갑 또는 을은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계약금액의 조정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조정요건에 해당하는 사유를 명시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서면(전자서면포함)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물가변동 기준일 이후에 반입한 재료와 제공된 역무의 대가에 적용하되, 물가변동기준일 이전에 이미 계약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제외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단가결정이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될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 임시단가를 적용하되, 이 경우 임시단가와 확정단가의 차액은 확정단가를 정하는 때에 소급하여 정산한다.

제7조(사급재의 지급) ①갑은 품질의 유지·개선, 생산성 또는 안전도의 향상, 관련법령의 준수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재료·부품·반제품 또는 제품 등(이하 "사급재"라 한다)을 을과 협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사급재의 유·무상 여부, 품명·수량·제공일 또는 지급장소, 대가·그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③을은 갑으로부터 사급재를 수령한 때에는 이를 신속하게 검사하여야 하며, 이에 품질·수량 등에 이상이 있는 때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한 후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갑이 정한 공급업자로부터 직접 수령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④을은 무상으로 사급재를 수령한 경우 이를 사용하고 남은 재료·스크랩 등의 처리에 대하여 갑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스크랩처리에 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갑과 협의하여 조치한다.

⑤을은 갑의 사급재에 가공불량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갑의 사급재로 인하여 제조부품에 불량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히 갑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하며 불량발생에 대한 보상책임은 원인제공자가 부담한다. 다만,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⑥을은 제3항에 의한 검사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급재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8조(사급재의 소유권) 사급재의 소유권은 갑이 보유한다. 다만, 갑이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경우에는 을이 그 대금을 완제한 때에 을이 이를 보유한다.

제9조(금형등의 양도·대여) ①갑은 발주부품의 품질의 유지·개선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거나 을의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치공구기계 또는 기구류 등(이하 "금형등"이라 한다)을 을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형등의 양도 또는 대여의 경우에 가격·임대료, 보관 또는 반납 등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한다.

③을은 대여받은 금형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그 원인

이 갑에게 있거나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요구에 따라 을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거나 대체품을 제공하는 등 갑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금형등의 대여에 대하여는 제7조제3항을, 금형등의 사용에 따른 불량부품의 발생에 대하여는 제7조제5항을, 금형등의 소유권에 대하여는 제8조를 각각 준용한다.

⑤을은 갑에게서 대여한 금형등에 대해 정해진 보증수명을 준수하지 못하였을 경우 에는 을의 부담으로 신규 금형을 제작하여야 한다.

제10조(사급재 및 금형등의 취급) ①을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금형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을은 갑의 동의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 또는 금형등을 소정의 용도이외에 전용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대여 또는 저당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을이 위반 하였을 때 갑은 이에 상응하는 손해에 대해 을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다.

③을은 갑 소유의 사급재 및 금형등을 을의 자산과 명확히 구분하여 보관하고, 갑의 소유임을 명시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④을은 강제집행, 파산선고신청, 회사정리의 신청 또는 노동쟁의 등과 같은 사유의 발생으로 갑 소유의 사급재 및 금형등에 대한 갑의 소유권 보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즉시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이들 물품의 보관장소를 이전하는 등 갑의 소유권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을은 을 소유의 사급재 및 금형등에 대하여도 제4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발주부품의 납품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그 처리방법을 상호 협의할 수 있다.

⑥을의 책임하에 제작된 금형등일지라도 갑으로부터 기술사양·설계도면 또는 자금 등의 지원을 받아 갑에게 납품하기 위한 부품제작용일 경우에는 을은 임의로 발주부품 제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⑦을은 제 7조의 규정에 의한 사급재에 대해 재고관리를 실시하여 갑이 요청시 실제 재고와 동일한 현황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납기) ①납기란 개별계약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는 장소에 납품할 기일을 말하며 개별계약마다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계약체결시 납기를 정하고 납기를 변경할 경우 (긴급 발주등으로 평소보다 짧은 납기를 정할 경우) 에는 서면(FAX) 또는 전산으로 내용을 공지하여 협의 진행한다

제12조(납품) ①을은 발주부품을 갑과 을이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납품절차에 따라 갑이 정하는 수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을은 납기의 선행·지연 또는 수량부족 등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갑과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을은 자기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에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④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을이 납품한 부품의 수량을 지연하거나 거부하여서는 아니되며, 부당한 수령지연 또는 거부로 인하여 을이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보수용 부품의 납품) 갑이 사양을 변경하였거나 생산을 중단한 자동차의 부품일지라도 이미 출하된 자동차의 사후관리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갑과 을이 별도로 정한 협약에 따라 갑이 보수용 부품을 발주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를 계속 생산하여 납품할 책임을 진다.

제14조(부당반품의 금지) ①갑은 납품된 부품에 대하여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품할 수 없다.

②부당반품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의 각호에 따른다.

제15조(상표의 표시·포장) 납품하는 부품에 대한 상표의 표시 및 포장상태는 갑이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수령·검사 및 인수) ①갑은 부품의 납품이 있는 때에는, 부품에 대한 검사는 미리 정한 검사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속히 실시하여야 한다.

②갑은 검사부품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부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을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기간내에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③갑은 을에게서 납품된 발주부품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가지고 관리하여야 하며, 이 경우 갑의 책임없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④발주부품에 대한 검사의 기준 및 방법은 갑과 을이 협의하여 정하되 이는 객관적이고 공정·타당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발주부품이 검사 또는 납품 완료되어 조립 사용되어지는 시점에 발주부품이 인도 되는 것으로 본다.

⑥을의 책임하에 납품 완료된 발주부품에 불량 등이 발생하여 갑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⑦발주부품의 기술적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1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7조(부족분·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의 처리) ①을은 검사결과 수량부족 또는 불합격된 부품에 대해서는 갑의 통지에 따라 신속히 부족품 또는 대체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을은 납품지연에 따른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②을은 검사결과 불합격품 또는 과 납품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인수하여야 한다. 다만, 불합격품에 대하여 성능상 지장이 없다고 갑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조건부 합격으로 인수할 수 있다.

③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을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반송하거나 을과 협의후 폐기할 수 있다.

④갑이 불합격품 또는 과납품을 보관하는 동안 보관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훼손 또는 변질된 경우 그 손해는 을이 부담한다. 다만, 제2항 본문의 규정에서 정한 기간내에 갑의 귀책사유로 생긴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불합격품이 갑이 지급한 사급재의 하자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은 갑이 부담한다. 다만, 을이 제7조제3항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제18조(부품의 소유권 이전) 발주부품의 소유권은 제16조제5항에 의하여 발주부품이 인도된 시점에 갑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제19조(대금의 지급) ①갑은 주문자재가 입고되어 완제품으로 조립된 시점일로부터 월 마감 후 (60)일째 되는 날에 을에게 부품대금을 지급한다.

②을은 납품대금을 직접 수령하는 때에는 갑에게 미리 등록한 인장이 날인된 영수증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을이 등록한 인장 및 영수증을 분실하거나 도난 등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장 및 영수증의 도난·분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은 을이 부담한다.

③대금의 지급방법은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13조제2항 내지 동조제8항을 적용한다.

제20조(부당감액의 금지) 갑은 을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납품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할 수 없다. 다만, 을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대금을 감액하는 경우에는 감액의 범위·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1조(대금의 상계) ①갑은 을에게 유상으로 지급한 사급재의 대금 기타 을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채권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을에 대한 납품대금의 지급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다만, 갑은 을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기성납품대금을 초과하여 상계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계는 갑과 을이 상계액에 대한 수령증을 교환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갑이 그 명세를 을에게 통지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2조(품질보증) ①을은 발주부품에 대하여 기획·설계·생산 및 판매 등 전 과정에 걸쳐 유기적인 품질보증체제를 확립·운영하여 제4조에서 정한 사양서류에 일치시켜야 하며, 갑이 요구하는 품질과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품질보증활동을 하여야 한다.

②갑과 을은 상호 또는 개별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품질보증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품질보증협정을 체결하고 제1항의 품질보증활동을 추진하여야 한다.

③을은 발주부품중 주요공정 및 공법의 변경, 금형의 수정 및 재제작, 재료변경, 조성부품의 국산화 또는 재하도급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갑에게 시제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활용하여야 한다.

제23조(하자담보책임) ①제18조에 의하여 발주부품의 소유권이 이전된 후 부품에 숨겨진 하자가 발견된 경우에는 을은 갑과 별도로 체결한 클레임보상협정에 따라 하자의 보수, 대체품의 납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진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자의 책임여부에 대하여 갑과 을이 합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제3자의 판정 기타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른다.

제24조(제조물책임) ①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에 결함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②갑은 을이 납품한 부품에 대하여 갑에게 제조물책임 청구 또는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또는 소송을 방어하며, 기타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③갑은 자기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제2항에 의하여 청구 또는 소송에 따른 관련비용을 부담한 경우에는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④갑과 을은 제2항에 의한 청구 또는 소송의 발생 방지·방어 및 대책수립에 상호 적극 협조한다.

제25조(자료수집 및 실태조사) ①갑은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생산관리·품질보증 등에 관한 자료·결산보고서 등 경영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발주부품의 생산 또는 품질보증과 관련하여 을의 공장설비·생산관리실태 등을 수시로 조사할 수 있다.

②을은 갑으로부터 제1항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6조【발주부품의 개선에 대한 상호협력】①을은 발주부품의 품질개선, 납기준수 또는 가격의 합리화 등을 위하여 개선제안을 할 수 있으며, 을의 제안이 효과가 있는 때에는 갑과 을이 함께 그 효과를 배분한다.

②을의 개선제안에 대한 사항은 별도의 계약으로 정할 수 있다.

③갑은 발주부품의 제작, 품질향상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을에게 제작기술·공법·자재 및 생산관리 또는 품질보증 등에 관한 지도·조언을 할 수 있다.

④지도·조언을 위해 갑이 을의 현장에 출입하여 확인·검사할 필요할 있을 경우 을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7조(산업재산권의 실시·출원) ①을은 발주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갑으로부터 사용을 허락받은 특허권·실용신안권·의장권·상표권(이하 “산업재산권”이라 한다) 또는 노우하우(KNOW-HOW)를 부품의 제작이외에는 사용하지 못하며, 문서에 의한 갑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제3자에게 산업재산권 또는 노우하우를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②을은 발주부품의 제작과 관련하여 을의 귀책사유로 제3자와 산업재산권상의 분쟁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갑이 손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을의 부담으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을은 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갑의 도면·사양서에 의하여 제작된 발주부품 또는 그 제작방법에 관하여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하거나, 발주부품에 관하여 갑과의 공동연구, 갑의 지도 또는 아이디어의 제공에 의거 산업재산권을 획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갑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갑과 산업재산권을 공동으로 출원한다.

④을은 을의 사양에 의하여 발주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부품 또는 그 제작방법이 제3자의 산업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갑의 사양에 따라 발주부품을 제작하는 경우에도 갑이 그 제작방법을 제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또한 같다.

제28조(재하도급) ①을은 갑이 발주한 부품을 제작함에 있어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갑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위탁하는 경우에도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따른 을의 이행 의무를 면할 수 없다.

③갑은 을의 제3자와의 재하도급거래에 개입하여 자신이 위탁한 부품의 품질유지 및 납기내 납품여부 등 하도급거래의 목적과 관계없는 '제3자의 선정·계약조건 설정 등' 재하도급거래내용을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9조(기밀의 유지) ①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으로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기술상 기밀을 상대방의 승인이 없는 한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갑과 을은 계약기간중,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의 해제·해지후에도 제1항에서 정한 의무가 있으며, 이에 위반하여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이를 배상한다.

제30조(주문 이외 부품의 제작·판매 및 사용의 금지)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지적재산권과 영업비밀을 침해할 수 있는 부품의 제작·판매 등을 스스로 하거나 제3자에게 시켜서는 아니된다.

1. 갑의 주문 또는 문서에 의하여 허락을 받은 경우
2. 이미 상호 합의하여 갑의 승낙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을이 부품을 독자적으로 개발한 경우

제31조(권리·의무의 양도) 갑과 을은 문서로써 상대방의 승낙을 얻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부수 협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개별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권리·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제3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2. 갑 또는 을이 감독관청으로부터 영업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3. 갑 또는 을이 어음·수표의 부도, 제3자에 의한 강제집행(가압류 및 가처분 포함), 파산·화의

개시 및 회사정리절차의 신청 등 영업상의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내용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4. 갑 또는 을이 해산, 영업의 양도 또는 타 회사로의 합병을 결의한 경우

5. 갑 또는 을이 재해 기타 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내용을 이행하기 곤란하다고 쌍방이 인정한 경우

②갑 또는 을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본 계약 또는 개별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다.

1. 갑 또는 을이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2. 갑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에 필요한 사항의 이행을 지연하여 을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3. 을이 정당한 사유없이 발주부품의 제작을 거부하거나 착수를 지연하여 납기내에 납품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을의 기술·생산 및 품질관리능력이 부족하여 계약내용을 원만히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③갑 또는 을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의 해제·해지사유가 발생한 경우 상대방에게 지체없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때에는 각 당사자의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채무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며 지체없이 이를 변제하여야 한다.

⑤갑과 을은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해제·해지됨으로써 발생한 상대방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3조(거래정지의 예고) 갑과 을은 제32조에 의한 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거래를 정지하고자 할 때에는 상대방에게 부당한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3월 이상의 거래정지 유예기간을 정하여 상대방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계약의 해제·해지후의 조치) ①을은 제32조제1항 또는 동조 제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에는 사양서류·대여품 또는 갑 소유의 사급재 및 금형등을 즉시 갑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을은 동 물품에 대하여 민·상법상 유치권등 어떠한 권리나 항변도 주장하거나 행사할수 없으며 그 어떤 이유로도 반환을 거부하거나 지체할수 없다. 을은 갑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을의 소유권에 속한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금형 등, 사급재 또는 발주부품의 재고를 제3자에 우선하여 갑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②을은 제32조 제1항 또는 2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갑의 요구가 있으면 을의 소유권에 속한 발주부품의 제작에 사용되는 모든 금형 등, 사급재 또는 발주부품의 재고를 제3자에 우선하여 즉시 갑에게 양도하여야 하며, 동 물품의 양도가격은 금형등은 인수시점까지의 감가상각을 감안한 가격을, 발주부품의 재고는 납품가격을, 사급재는 을의 지급가격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갑과 을이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갑에 의해 취득한 을의 인증에 관련된 사항은 거래 종료 시 인증이 함께 종료된다.

제35조(손해배상의 청구) 갑과 을은 본 계약 또는 개별계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36조(이의·분쟁의 해결) ①갑과 을은 본 계약 및 개별계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의 해석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서면상의 자료에 따르며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 또는 을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중재법에 의한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37조(유효기간) ①본 계약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2)년간 효력을 가진다. 다만, 갑 또는 을이 계약기간만료 3월 전까지 계약갱신 또는 해약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는 한 본 계약은 동일한 조건으로 1년간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된 이후에도 개별계약의 효력이 존속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본 계약의 효력은 당해 개별계약의 존속기간까지로 한다.

제38조 [지체상금]

①을이 계약기간내에 납품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갑은 정해진 클레임 규정에 의해 지체에 따른 손실금액을 (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하도급대금에서 공제한다.

②갑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갑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거나 제조가 중단된 경우
3. 을의 부도 등으로 연대보증인이 보증이행을 할 경우(부도 등이 확정 된 날부터 갑이 보증이행을 지시한 날까지를 의미함)
4. 을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갑로부터 보증채무 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를 의미함, 다만 30일이내에 한함)
5.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③ 지체일수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호의 1과 같다

1. 계약기간 내에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기간 이후에 검사시 을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에 따라 검사에 따른 수정요구를 을에게 한 경우에는 수정요구를 한 날로부터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계약기간을 경과하여 납품을 완료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익일부터 검사(수정요구를 한 경우에는 최종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①(기본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은 본 계약체결로 인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②(개별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본 계약 체결당시 종전의 기본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모든 외주거래에 관한 개별계약은 본 계약에 의하여 체결된 개별계약으로 본다.

본 계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4, 오창과학단지 4-9블록

상 호 : (주)에스엠알 풍정

대표자 : 김재석 외1

☞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

<별표1> 계약체결 방식의 선택요건

| 계약체결방식 | 요건 |
|--------|--|
| 수익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자재의 가격급등 기타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을 경우 . 현재의 거래상대방과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해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당해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허공법이나 신기술에 의한 공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

| | |
|--------|--|
| | <p>구매하는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 |
| 일반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한 기준없음 -물품 등의 유형 및 중요성, 거래상대방 수 등을 고려하여 선택 |
| 제한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계약 ·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계약 ·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는 계약 ·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경쟁참가 자의 재무상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쟁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입찰공고시 그 제한사항과 제한 기준을 명시 |
| 지명경쟁계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규격표시를 인정받는 제품,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

품질보증협정서

목 차

| | |
|-------------------------|----|
| 제1조(품질보증의무)..... | 15 |
| 제2조(품질보증을 위한 실시사항)..... | 15 |
| 제3조(사양의 확인 및 변경)..... | 15 |
| 제4조(을의 검사)..... | 15 |
| 제5조(갑의 검사)..... | 16 |
| 제6조(품질 문제에 대한 조치)..... | 16 |
| 제7조(품질보증 자료의 제출)..... | 16 |
| 제8조(품질수준의 평가)..... | 16 |
| 제9조(품질 감사)..... | 16 |
| 제10조(기밀의 유지)..... | 16 |
| 제11조(벌칙)..... | 16 |
| 제12조(협정의 유효기간)..... | 18 |
| 별표1 (품질보증 요령)..... | 19 |
| 별표2 (제출서류 일람표)..... | 22 |

품질보증협정서

(주)에스엠알 풍정(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회사 이하(을이라 한다)는 20
년 월 일자로 체결한 기본 계약서에 의거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부품의 품질에 대하여 적정품
질의 확보와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갑과 을 상호 및 개별적으로 실시하는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품질보증의무)

1. 을은 갑에게 납품하는 자재에 대하여 그의 전 생산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보증체제를 확립하여 운영하고 갑에게 요구되는 품질은 초도품 생산 시부터 요구되는 품질의 수준을 만족하고 더욱 높은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것을 보증해야만 한다.
2. 을은 전항의 보증에 대하여 을이 구입하는 자재 또는 외주자재의 품질에 대하여도 책임을 져야 한다

제2조 (품질보증을 위한 실시사항)

을은 전조의 보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적어도 별지에 기재한 내용을 포함하는 [품질보증요령]을 작성하고 이에 의거 수주로부터 납품 후의 A/S까지의 모든 공정에 걸쳐 일관된 품질을 보증하는 동시에 항상 과학적인 기법을 사용하여 관리 수준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제3조 (사양의 확인 및 변경)

1. 갑은 요구하는 품질을 사양 서류에 의거 을에게 제시하는 것으로 하며 그 내용은 기본 계약서 제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을은 갑이 제시한 사양서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경우 또는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지체 없이 갑에게 통지하고 협의 해야 한다.
이 경우 갑과 을은 협의 후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합의 각서의 교환 또는 도면 승인 등에 의하여 상호 확인 해야 하며, 을로부터 상기의 신고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갑의 사양이 그대로 적용되는 것으로 한다.
3. 갑은 사양서의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즉시 을에게 통지하고 을은 이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양서를 수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 경우 변경 통지에 대하여는 전항을 준용한다.

제4조 (을의 검사)

1. 을은 전조의 사양에 의거 을이 실시하는 검사의 기준을 작성하고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을은 전항의 검사기준에 따라 필요한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된 자재를 납품하는 동시에 검사성적서를 작성해야 하며 갑의 요구에 따라 갑에게 제출한다.

제5조 (갑의 검사)

1. 갑은 을이 납품하는 자재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입검사를 실시한다.
2. 갑은 을의 품질보증이 충분하다고 확인될 경우 전항에 수입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 (품질 문제에 대한 조치)

1. 을은 납품한 자재에 품질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갑과 협의하여 신속히 해결하는 동시에 그 요인을 분석하고 사후의 품질보증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
2. 전 항의 품질 문제 발생시 그에 따른 클레임의 해결에 필요한 비용 등의 보상 및 그 보상 기간은 갑과 을이 별도로 체결하는 클레임 보상협정에 따른다.

제7조 (품질보증 자료의 제출)

1. 갑은 을의 품질보증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을에 대하여 [별표]의 제출서류일람표를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전항의 자료를 갑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한다.

제8조 (품질수준의 평가)

갑은 을이 납품한 자재에 대하여 갑이 정하는 품질평가기준에 따라 품질수준을 정기 또는 수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필요할 때마다 을에게 통지한다.

제9조 (품질감사)

1. 갑은 을의 품질보증체제, 제조공정 및 납품하는 자재 등에 대하여 현장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을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 및 권고를 할 수 있다.
2. 을은 전항의 권고에 대하여 신속히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그 계획서를 갑에게 제출하는 동시에 사후의 실시상황 및 결과를 갑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0조 (기밀의 준수)

1. 갑 및 을은 상호의 양해 없이는 이 협정 및 이에 관한 일체의 서류의 내용을 제 3자에 발설하여서는 안 된다.

제11조 (벌칙)

1. 이 벌칙조항은 적정품질의 확보와 신뢰성의 향상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기술의 부족, 관리능력의 부족, 원자재의 구입난 및 기타 국내 제반 여건의 실정상 이 협정에서 정하는 규정사항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을은 이행할 수 없는 사항을 반드시 사전에 갑에게 신고하여 상호 협의 하에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갑의 사전양해를 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항의 벌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이 협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갑이 을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을 하되 허위로 작성하거나 또는 작성하여 제출한 내용과 같이 실제로 이행하지 않고 허위로 이행하는 등 불성실한 경우에는 일반적 위반사항보다 엄한 벌칙을 적용하는 외에 갑은 을의 불성실의 정도에 따라 을과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할 수 있다.
3. 품질을 확실하게 보증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 협정서의 규정사항 중 주요사항의 위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벌칙을 정하여 시행하고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 1) 갑이 아래 서류 중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을에게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을이 작

성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갑은 해당품목에 대한 을의 납품대금 중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 ① 검사기준서
- ② 품질관리공정도
- ③ 검사성적서
- ④ 공정변경통보서
- ⑤ 롯트이력표
- ⑥ 개선실시계획서
- ⑦ 불량재발방지대책서

2) 아래의 각 경우 갑은 해당품목에 대한 을의 납품대금 중 3%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을의 납품대금에서 공제한다.

- ① 검사성적서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을 하였으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② 롯트이력표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은 하였으되 허위로 작성하였을 경우
- ③ 품질관리공정도를 을이 작성하여 제출은 하였으되 현장에서 공정도 대로 실행하지 않은 경우
- ④ 을이 자체적으로 설계의 변경, 공정의 변경 및 특히 원재료의 재질을 변경하고도 공정변경통보서 등으로 사전에 갑에게 통지하지 않은 경우
- ⑤ 을이 외주공장이용신청서를 사전에 갑에게 제출하지 않고 을의 협력공장을 이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3) 을이 갑에게 변경사항을 신고하고 재 승인을 득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① 재질변경 : 기 승인된 부품에 사용되었던 것과 다른 재질 사용 시
- ② 금형변경 : 새로운 금형 또는 수정 금형 사용시
- ③ 공정 재 배열 : 기존의 금형 및 설비의 재 배열 또는 대치 시
- ④ 제조 공법의 변경 : 제조 공법 및 공정의 변경사항 발생 시
- ⑤ 생산공장 이전 : 금형 또는 설비가 다른 장소로 이전 시
- ⑥ 재하도급 변경 : 2차 부품 업체를 변경 시
- ⑦ 표면 처리 변경 : 열처리 표면처리 등의 재료 처리 방법의 변경 시
- ⑧ 방치 금형의 사용 : 1년 이상 금형 등이 사용되지 않다가 재 사용시
- ⑨ 품질 문제 : 갑이 품질 문제로 납품 중단을 요청한 후 납품 재개 시
- ⑩ KD부품 국산화 시

4) 을의 불량품이 갑에게 납품되었을 때에 해당불량에 대한 을의 책임자가 즉시 갑과 불량대책을 협의하지 않거나 불량원인을 형식적으로 설명하는 등 불성실한 경우.

5) 갑은 을이 제11조에 정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기본계약서에 따라 계약의 해지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6) 을은 품질 문제 발생시 가장 신속,정확하고 최소의 비용으로 개선 될 수 있도록

부품의 로트관리를 실시 하여야 한다.

제12조 (협정의 유효기간)

본 협정의 유효기간은 _____년 _____월 _____일로부터 기본계약서의 유효기간 중으로 한다.

본 협정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서명날인한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4, 오창과학단지 4-9블록

상 호 : (주)에스엠알 풍정

대표자 : 김재석 외1

☞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

<별표1> 품질보증요령

| | |
|----|------|
| 항목 | 실시사항 |
|----|------|

| | |
|------------|--|
| 1.품질보증체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품질에 관한 기본방침을 명시한다. (2) 품질에 관한 기본방침에 의거 구체적인 품질목표를 정한다. (3) 품질보증의 구체적인 방법 및 그 수법에 관한 교육계획을 세우고 이 계획에 따라 실시한다. (4)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주된 부문 및 품질보증책임자를 명확하게 정한다. 또한 품질보증부문은 타 부문으로부터 부당한 구속을 받지 않도록 기능을 독립시킨다. (5) 검사기준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한다. (6) 사내규정, 표준서는 정기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정한다. |
| 2.사양서류의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양 도면 등은 배포, 개정, 회수, 보관 등의 절차를 관리규정으로 정하여 명문화한다. (2) 전호의 관리규정에 따라 도면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도면 사양 등의 관리를 한다. |
| 3.제품의 개발개선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제품의 개발 및 현 생산품의 품질개선을 위한 활동을 조직적으로 실시한다. (2) 시험연구를 위하여 설비 등의 능력을 갖춘다. |
| 4.초기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제품, 설비변경 및 공정변경 후의 초도품의 초기관리에 관한 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해야 하며 이 표준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관리기간중에 실시해야 할 업무 및 그 담당부문의 명확화 ㉡ 초도품, 검사실시의 절차 ㉢ 초도관리와 일상관리에 있어서의 검사방식의 차이 ㉣ 초도관리 해제의 판단기준 (2) 갑이 설계변경 또는 사양변경을 지시할 경우 그 내용 및 변경실시기간등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검토, 협의한 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을이 자체로 행하는 설계변경 또는 공정변경에 대하여 전호와 동일한 방법으로 관리하고 사전에 갑에게 통지한다. (4) 변경실시시기는 갑의 지시에 따른다. 이에 따르기 어려운 때에는 즉시 갑에게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
| 5.초도납품요령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신제품, 설계변경 및 공정변경의 초도품은 각각의 설비에서 충분히 검토하는 동시에 완성품은 품질보증부문이 확인한다. |

| | |
|---------------|---|
| | (2) 초도품 검사성적서는 갑이 지시하는 기한까지 시료를 첨부하여 갑에게 제출한다. 초도품에 대하여는 갑의 검사를 받아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양산해야 한다. |
| 6.검사방법 | (1) 을이 자체로 실시하는 수입검사공정도 검사 및 출하(완성) 검사의 방법을 정하고 표준화한다. |
| 7.정도관리 | (1) 계측기 및 시험기에 관한 정도관리업무를 명확하게 하고 표준화한다. (2) 치공구, 금형, 게이지에 대하여서도 전호에 준한 관리를 한다. |
| 8.원재료 및 부품관리 | (1) 구매거래선과 사양의 협정을 체결한다. (2) 구매거래선으로부터 롯데별 시험성적서를 입수하고 보관한다. (3) 수입검사를 실시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롯데의 관리를 실시한다. (4) 불량 및 스크랩처리를 포함한 보관관리의 절차를 정하고 표준화한다. (5) 전체의 공정에 걸쳐 이종품 및 이종자재의 혼입을 방지한다. |
| 9.외주선의 관리 | (1) 갑의 승인을 얻어 외주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검사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여 중요품질관리항목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그 관리를 철저하게 시킨다. (2) 외주선의 품질보증체제 또는 중요관리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지도한다. (3) 외주선으로부터 수입되는 부품의 수입검사는 개개의 수입검사기준에 의하여 실시한다. (4) 특수공정을 외주선에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3항에 명시한 내용에 따라 검사 지도한다. |
| 10.제조공정의 품질관리 | (1) 제조공정에 있어서 요구하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방법을 정한 품질관리공정도를 작성한다. (2) 품질관리공정도에 표시된 주요공정에 대하여는 작업표준을 정하고 작업순서 및 작업의 포인트를 명시한다. (3) 작업자가 자주검사를 하는 항목에 대하여는 각 작업장소에 그 검사요령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4) 주요품질관리항목에 대하여는 품질보증부문 또는 감독자 등이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적정품질을 유지한다. |
| 11.공정능력의 파악 | 갑이 지정한 특성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대하여는 통계적으로 공정능력을 파악하고 품질을 유지 및 개선한다. |
| 12.신뢰성 시험의 실시 | 갑이 지정한 특성 및 기타 중요한 특성에 대하여는 정기적으로 |

| | |
|---------------------------|---|
| | 신뢰성시험을 실시하며 품질을 확인하여 기록한다. |
| 13.특수공정의 관리,용접,열처리,표면처리 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이 지정한 특수공정의 작업자는 갑이 인정하는 기능보유자일 것. (2) 용접 및 열처리 설비는 정기적으로 정도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또한 용접,열처리 및 표면처리 설비에 대하여는 전극, 사용액 등의 관리절차를 명확히 정하여 적정한 정도를 유지한다. (3) 작업조건 및 자주검사 요령을 명확하게 한 작업표준을 제정하여 각 작업장소에 게시한다. (4) 검사를 롯트 단위로 실시하고 그 기록을 보관한다. (5) 갑이 요구한 시험을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보유한다. |
| 14.출하(완성)검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롯트 단위로 품질보증부문에 의한 출하(완성)검사를 실시하여 품질을 보증한다. (2) 출하(완성), 검사요령은 검사기준서 및 한도 견본에 따른다. (3) 신뢰성 확인 및 품질평가를 포함한 정기검사시험의 실시요령, 일정을 정하여 이에 따라 실시한다.또한 갑이 시험을 확실하게 실시할 수 있는 설비능력을 보유할 것. (4) 제품에는 합격, 불합격, 유보 등의 표시를 하여 검사결과를 식별하고 혼입을 방지한다. |
| 15.정보관리 | 사내외의 품질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집, 분석하여 미비점의 재발방지, 검사방법의 조정 등에 유효하게 활용한다. |
| 16.롯트이력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롯트 이력관리의 대상이 되는 포장, 납품용기, 제조공정 및 모든 전표에는 갑이 지정한 표시를 한다. (2) 갑이 지정한 제품에 대해서는 롯트관리를 실시하는 외에 원재료 수입으로부터 완성품까지의 이력을 파악하고 롯트 단위의 품질기록을 10년 이상 보관한다. (3) 제품은 선입선출을 확실하게 이행한다. |
| 17.보안부문 관리 |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안부문인 것을 철저히 주지시키기 위하여 구체적인 배치를 강구한다. (2) 갑이 지정한 보안특성 등에 대하여는 외주선을 이용하여서는 안된다. 할 수 없이 이용한 경우에는 사전에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갑이 지정한 보안특성에 대하여는 제4항의 초기관리를 적용시킨다. (4) 갑이 지정한 보안특성의 검사는 제6항에 따른다. (5) 갑이 지정한 보안특성에 대하여는 제11항에 의한 공정능 |

| | |
|-------------|---|
| | <p>력의 파악을 행한다.</p> <p>(6) 갑이 지정한 보안특성에 대하여는 제12항에 의한 신뢰성의 확인을 행한다.</p> |
| 18.품질문제의 처리 | <p>(1) 제조공정 및 검사에서 발견된 품질문제에 처리요령을 명확하게 하는 동시에 피드백체제를 확립한다.</p> <p>(2) 품질문제에 관한 조치를 취하였을 때에는 그 기록을 보관한다.</p> <p>(3) 불량품에는 식별표시를 하여 보관장소를 정하고 혼입을 방지한다.</p> <p>(4) 불량품을 수정하였을 경우에는 재검사를 실시한다.</p> <p>(5) 특별채용을 받을 경우에 처리절차 및 재발방지의 처리절차를 명확하게 해 놓는다.</p> |
| 19.방청처리 | <p>제품에는 갑이 지정한 방청유를 도포하고 지정하지 않은 것에는 발청하지 않도록 필요한 처리를 한다.</p> |
| 20.포장,수송 요령 | <p>제품의 취급, 보관, 포장, 수송은 손상, 품질저하,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처리를 한다.</p> |
| 21.기타 | <p>(1) 품질보증요원을 양성하고 적절하게 배치한다.</p> <p>(2) 공장의 환경을 정리한다.</p> |

<별표2>제출서류 일람표.

| 서류명칭 | 내용 |
|-----------|---|
| 검사기준서 | 검사의 항목, 규격, 방법, 취급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
| 품질관리공정도 | 가. 품질관리요령을 각 공정마다 기재한 서류 |
| 검사성적서 | <p>다음의 각 검사의 결과를 기재한 서류</p> <p>나. 초도품 검사</p> <p>다. 정기검사 시험(갑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한다)</p> <p>라. 시작품 검사</p> <p>마. 열처리작업(갑이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출한다)</p> <p>초기관리(갑이 요구한 것에 대하여 제출한다)</p> |
| 공정변경통보서 | 자체적으로 스스로 행하는 설계변경 혹은 공정변경의 내용, 시간 등을 기재한 서류 |
| 공정능력조사서 | 갑이 요구한 경우 을이 파악한 공정능력의 추이를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
| 롯트이력표 | 갑이 요구한 경우 롯트관리의 이력을 기재하여 제출하는 서류 |
| 외주공장이용신청서 | 협력공장을 이용하는 경우 갑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제출하는 서류 |
| 개선실시계획서 | 갑이 요구한 경우, 품질보증체제의 개선계획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

| | |
|-----------|--|
| | 서류 |
| 불량재발방지대책서 | 갑이 요구한 경우 불량대책을 기재해서 제출하는 서류 |
| 검사시험설비일람표 | 갑이 요구한 경우 검사시험설비를 기재해서 제출하는 서류 |
| 한도견본표 | 도면, 검사기준 등에 곤란한 품질특성의 합격한도에 대해서 갑의 승인을 득하기 위해 현품에 첨부해서 제출하는 서류 |
| 특별채용의뢰서 | 갑의 특별채용의 검토를 의뢰하는 경우 제출하는 서류, 다만, 같은 사항이 1회 이상 초과시에는 허용하지 않음. |

클레임보상협정서

목 차

| | |
|----------------------|----|
| 제1조(클레임의 정의)..... | 25 |
| 제2조(보상 책임)..... | 25 |
| 제3조(클레임의 인정)..... | 25 |
| 제4조(보상책임 기간)..... | 26 |
| 제5조(클레임의 통지)..... | 26 |
| 제6조(클레임부품의 반환)..... | 26 |
| 제7조(보상방법)..... | 26 |
| 제8조(보상금액의 지불방법)..... | 27 |
| 제9조(협의)..... | 27 |
| 제10조(유효기간)..... | 28 |
| 별표1 (클레임 분류표)..... | 29 |

클레임 보상 협정서

(주)에스엠알 풍정(이하 “갑”이라 한다)와 _____ 회사(이하 “을”이라 한다)은 기본계약서에 클레임방지를 위하여 납입부품 및 부수부품에 대한 클레임이 발생한 경우 그 보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클레임의 정의)

1. 이 협정에서 [클레임]이라고 함은 갑이 제품으로서 출고할 때까지의 공정내에서 발견된 납입부품의 불량 또는 갑이 출고 후 보증수리의 대상이 된 납입부품 및 갑이 지정한 납기일자 초과 및 그에 준한 귀책이 을에 있는 제반물류비용 및 부품의 결함으로 인하여 통상 유발될 수 있는 타부품에 고장이 발생함으로써 갑이 이로 인하여 손해 또는 고객에게 배상한 금액을 을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클레임은 라인클레임, 통상클레임, 특인클레임, 서비스캠페인 및 서비스프로그램, 일반클레임, 물류클레임, 등으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별표 1에서 명시하는 클레임분류표에 의한다.
2. 이 협정에서 [납입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 및 갑이 지정한 제3자에게 부품으로서 납품한 것을 말한다.
3. 이 협정에서 [부수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납입부품의 불량으로 인하여 부수적으로 고장이 발생한 관련부품을 말한다.
4. 이 협정에서 [클레임부품]이라고 하는 것은 클레임의 대상이 된 납입부품 및 부수부품을 말한다. 이 협정에서 [물류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을이 갑이 지정한 납기일자에 초과하여 발생한 정규물류 이외의 추가물류로 (차량, 선박, 항공) 발생한 제반비용

제2조 (보상 책임)

을은 당해 클레임의 발생이 을의 납입부품에 그 원인이 있을 때에는 이 협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갑에게 그 보상책임을 진다.

제3조 (클레임의 인정)

1. 전조의 클레임 발생이 을의 납입부품에 기인한 것인지의 여부는 갑이 지명한 자로 하여금 판정하게 하고 을은 이 판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을은 전항의 판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클레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식문서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갑은 이 경우에 한하여 조사 또는 을과 협의하여 클레임 인정여부를 결정한다.
3. 클레임의 원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범위

내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 (1) 소유자 및 사용자의 부적절한 취급 및 구조변경에 의한 경우
- (2) 갑이 을에게 제공한 사급 자재의 하자로 인한 경우로서 을이 기본계약서상의 확인, 통지 등의 의무를 적절히 이행한 경우
- (3) 갑이 을에게 제공한 설계사양의 귀책에 의한 경우
- (4) 갑이 을에게 지정한 납기일자 및 그에 준한 귀책에 의한 경우

제4조 (보상책임 기간)

1. 을의 납입부품으로 인한 클레임의 보상책임 기간은 신차등록 후 60개월, 주행거리 100,000Km 중 제일 먼저 도달하였을 경우 그 원인이 납입부품에 의한 경우로 한다.
2. 특인클레임, 써비스캠페인, 리콜캠페인 및 써비스프로그램은 전항의 배상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 등 OEM에서 갑에게 클레임이 제기될 때에는 갑이 을의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에는 을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협의에 의하여 처리한다.
3. 갑이 배상책임 부담조건으로 갑의 OEM에서 실시하는 특인클레임, 써비스캠페인, 리콜캠페인 및 써비스프로그램의 대상부품과 동일생산 롯트로 제조되어 보수용 부품으로 갑의 OEM에게 납품한 경우 을은 당해 롯트보사용 납입부품에 대하여서도 보상책임을 부담한다.
4. 물류클레임은 국내 및 해외 특성에 의한 책임기한을 24개월을 원칙으로 하며 배상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경우 OEM에서 갑에게 클레임이 제기될 때에는 갑이 을의 책임에 기인하는 경우 을은 보상책임을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갑과 을의 협의 하에 처리한다

제5조 (클레임의 통지)

갑은 클레임의 내용을 갑이 정하는 문서에 의하여 을에게 통지한다.

제6조 (클레임부품의 반환)

1. 을은 클레임청구에 대한 갑으로부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을의 비용과 책임으로 클레임부품을 인수해야 하며 이 기간 경과 후에는 갑이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단, 클레임부품의 갑의 OEM 및 해외에 소재하는 경우 을의 요구에 의해서만 갑은 을의 비용과 위험부담 하에 당해 클레임 부품의 반환에 협조한다.
2. 클레임이 발생한 고품을 회수하여 반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고품단가보다 클 경우에는 반품하지 않고 발생현장에서 폐기처분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조 (보상방법)

1. 갑은 라인클레임의 경우 갑의 선택으로 다음 각 호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보상을 을에게 청구한다.

- 1) 대체부품
을은 클레임부품에 대하여 즉시 대체품을 납품한다.
 - 2) 수리비
을은 갑이 클레임부품을 선별, 수리하거나 또는 갑이 제3자에게 클레임부품을 수리시키는 경우 을로 하여금 갑의 사업장 사내외에서 을의 비용부담으로 클레임부품의 수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3) 기타보상
을은 을의 클레임부품에 기인한 부수부품의 비용 및 전 각호에 부수하여 발생한 기타 비용 일체에 대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2. 통상클레임 및 특인클레임, 물류클레임의 경우 OEM이 갑에게 보상을 요구할 때 을은 다음 각호에 정한 비용의 합계액을 갑에게 보상한다.
 - 1) 부품비
을은 클레임의 원인이 된 을의 납입부품 및 이로 인한 부수부품의 전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을이 보상해야 할 부품의 가격은 보상시점에서 해당부품의 보상비 납품가격에 갑의 일반관리비 8%를 합제한 가격으로 한다.
 - 2) 수리비
을은 갑의 전항부품을 교체 또는 선별, 수리하기 위하여 소요된 비용에 대하여 갑의 규정에 따른 공수 및 공임율에 의하여 수리비를 갑에게 지불해야 한다. 즉 공수 및 공임률이 갑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갑이 OEM측에게 배상한 공수 및 공임률을 적용한다.
 - 3) 물류비
클레임의 원인이 을의 납입부품의 납기초과 및 그에 준한 책임이 있을 경우 갑이 적용한 임율 및 물류비용에 따라 적용한다.
 - 4) 갑이 OEM측에게 클레임보상을 위하여 부품의 외주구입, 외주수리 및 차량 견인 등의 부대비용을 배상하였을 때에는 을은 갑이 배상한 전액전부를 갑에게 보상한다.
 - 5) 수출보수용부품의 클레임부품을 을이 현품으로 교체 납품코자 할 때에는 해당 교체품을 갑의 OEM측 해외대리점에 송부하는데 필요한 운임, 보험료, 통관비 등 부대경비 일체를 을은 갑에게 보상하여야 하며 송부방법은 항공수송을 원칙으로 한다.
 3. 라인클레임, 통상클레임, 특인클레임, 물류클레임에 해당되지 않는 클레임의 비용에 대해서는 갑,을 별도 협의하에 그 보상방법을 결정한다.

제8조 (보상금액의 지불방법)

제7조의 보상금액의 지불은 을이 갑에 대하여 외상매출채권을 가진 경우에는 이와 상계 통지없이 상계하여 외상매출채권이 없는 경우에는 갑이 지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제9조 (협의)

이 협정에 정해져 있지 않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및 이 협정의 각 조항에 해석상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갑을간의 기본계약서에 의하고 기본계약서에 규정이 없는 사항은 갑과 을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제10조 (유효기간)

1.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협정체결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하고 이 기간 사이에 납품되는 전 제품에 적용한다.
2. 갑 또는 을이 기간만료 3개월전까지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의 협정은 동일한 조건으로 5년간 연속되는 것으로 보며 그 이후도 동일하다.
3. 이 협정의 종료 후 라고 하더라도 을이 납품한 제4조에 정한 보상기간 내에 있으면 이 협정은 효력을 갖는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4, 오창과학단지 4-9블록
상 호 : (주)에스엠알 풍정
대표자 : 김재석 외1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 클레임의 명칭 | 내 용 |
|---------|-----|
|---------|-----|

<별표 1> 클레임 분류표

| | | |
|---------|-----------|---|
| 라인 클레임 | | 을의 납입부품을 갑이 검수 후 제품으로서 출하하기 까지의 사이에 발생한 클레임 |
| 통상 클레임 | 일반클레임 | 갑의 OEM측 차량소유자에게 약속한 서비스보증서에 명시된 보증조항 및 기간내에 발생한 클레임 |
| | 보수용부품 클레임 | (1) 을의 납입부품 중 갑 및 갑의 OEM측 국내외 대리점이 차량소유자에게 보수한 후 일정한 보증기간내에 발생한 클레임 (2) 을의 납입품을 갑이 OEM측 검수합격시켜 OEM측 국내외 대리점에 인계한 후 해당 납입품에 숨겨진 품질의 이상으로 인하여 갑이 갑의 OEM측 국내외 대리점에 담보 책임을 이행 함으로서 발생하는 클레임 |
| 특인 클레임 | 분담클레임 | 갑의 OEM측 서비스보증서에 명시하는 보증기간의 5배 한도내에서 발생한 고장으로서 갑이 특별히 소유자에게 그 비용의 일부를 변상하는 클레임 |
| | 정책클레임 | 갑의 OEM의 서비스보증서에 명시하는 보증조항 및 기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고장으로서 보안특성부품 및 이에 준하는 고장으로서 보안특성부품에 대하여 갑의 OEM측이 특별히 소유자에게 인정하는 클레임 |
| 서비스캠페인 | | 보안부품 및 이에 준하는 중요도를 갖고 있는 부품에 대하여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 예상되는 고장을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전해당차량에 대하여 주행기간에 관계없이 갑의 OEM측이 일련의 처리를 필요로 요구하는 클레임 |
| 서비스프로그램 | | 보안 및 기능특성상 중요도를 갖고 있는 부품에 대하여 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예상되는 고장을 사전에 예방키 위하여 해당 차량 중 일정 주행기간 이내의 차량에 대하여 갑의 OEM측이 일련의 수리를 필요로 요구하는 클레임 |
| 일반클레임 | | 1) 조립라인 부품 결품으로 인한 갑의 손실액 또는 을의 귀책으로부터 제기된 라인결품을 포함한 제반비용 (결품클레임이라 정의하며) 적용임율은 2011년 11월 현재 분당 2.390원 ,시간당 143.500원이며 잔업결품시 분당 3.585원 철야시 4.780원의 기준임율로 적용한다 (외주조립처 결품으로 인한 결품클레임도 에스엠알풍정 기준으로 적용한다) 2) 갑의 검사 또는 무검사로 입고된 부품중 조립라인에서 전수선별에 따른 제반 비용 3) 을의 결품으로 인한 갑이 OEM결품방지를 위해 취한 제반경비를 포함한 클레임 |

| | |
|--------|--|
| 물류클레임 | <p>1) 해외 물류클레임은 고객납기일의 납기초과 및 그에 준한 책임이 발생된 물류비 및 제반비용으로 을의 귀책에 의한 발생된 비용을 말하여 발생시점의 물류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p> <p>2) 국내 물류클레임은 고객납기일의 납기초과 및 그에 준한 책임이 발생된 물류비 및 제반비용으로 운임기준은 2011년11월산출기준 1톤 220.000원 , 2.5톤 260.000원으로 적용한다) (외주조립처 물류클레임도 에스엠알풍정 기준으로 적용한다)</p> |
| 갑의 OEM | 갑이 거래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 메이커 및 해외공장과 수출로 거래가 있는 해외 수입처 |

윤리 및 행동규범

목 차

| | |
|----------------|----|
| 제1장(윤리원칙)..... | 35 |
| 제2장(행동규범)..... | 36 |
| 제3장(결격사유)..... | 39 |

윤리및행동규범

이 규정은 (을)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 및 행동규범을 제시함으로써 (을)의 윤리 의식과 사명감을 제고하고 (갑)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준수범위의 자율결정

윤리규정준수의무자는 수행하는 업무활동의 성격에 따라 행동규범의 일부가 적용되지 아니 할 수 있다. 따라서 (을)를 비롯한 모든 윤리규정준수의무자는 행동규범의 준수범위를 자기책임하에 스스로 결정하여야 하며, (갑) 및 일반대중의 신뢰제고와 기대충족 및 스스로의 자부심 향상을 위하여 이 규범의 준수범위를 최대한 확대하여야 한다.

구 성

이 규정은 제1장 윤리원칙(Ethics Standards)과 제2장 행동규범(Rules of Conduct)및 제3장 결격사유(Fitness Standards)로 구성한다.

제1장 윤 리 원 칙

제1조 (갑)우선의 원칙 (Client First)

(을)은 (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것은 전문직 종사자의 기본적인 덕목이므로 (을)은 정직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항상 자신의 개인적 이익 보다 (갑)의 이익을 우선하여야 한다.

제2조 성실성의 원칙 (Integrity)

(을)은 성실하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성실성은 정직하고 솔직한 업무수행을 뜻한다. (을)은 (갑)의 신뢰를 확보하여야 하며, 신뢰의 근원은 (을)의 성실성에 있다. 성실성은 거짓 또는 기만이나 원칙을 경시하는 것과는 양립 할 수 없는 것이며, (을)은 성실성의 원칙에 따라 윤리규정의 각 조항의 내용은 물론 정신도 함께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 객관성의 원칙 (Objectivity)

(을)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객관성은 지적 정직함(intellectual honesty)과 편견 없는 분별력을 뜻하며,(을)은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이해상충을 관리하며, 전문가로서 건전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제4조 공정성의 원칙 (Fairness)

(을)은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해상충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공정성은 (갑)이 당연하게 기대하는 것을 (갑)에게 합리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뜻한다.

(을)은 (갑)에게 중대한 이해상충 사항을 정직하게 알려야 하며, 이해관계의 균형을 위하여 자신의 감정과 편견 및 욕구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 전문가정신의 원칙 (Professionalism)

(을)은 전문가로서 모범이 되는 태도와 방법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전문가정신은 항상 자부심을 가지고 행동하여야 하며,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갑)은 물론 동료 전문가 및 다른 관계자들을 존중하고 정중하게 대하는 것 뿐만 아니라 관련 규정과 법률 및 전문가로서의 자격요건을 준수하는 것을 뜻한다. 전문가정신에 따라 (을)은 독자적으로 또는 동료 전문가들과 함께 (을)의 일반 대중에 대한 이미지를 제공하고 공익에 대한 봉사능력을 유지하고 향상시켜야 한다.

제6조 능력개발의 원칙 (Competence)

(을)은 전문서비스를 전문자격자답게 능숙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능력,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능력개발은 전문서비스 제공에 필수적인 적절한 수준의 능력, 기술 및 전문 지식을 습득하고 유지하는 것과 함께 자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여야 하는 적절한 시기 및 다른 전문가에게 (갑)을 소개하는 것이 필요한 시기를 분별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7조 비밀유지의 원칙 (Confidentiality)

(을)은 (갑)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비밀유지는 적절한 권한을 가진 사람에게만 관련 정보의 접근을 허용하는 방법으로 (갑)의 정보를 보호하고 유지하는 것을 뜻한다. (갑)정보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바탕이 되어야 (갑)과의 신뢰 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

제8조 근면성의 원칙(Diligence)

(을)은 근면하게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보충설명)

근면성의 원칙에 따라 (을)은 전문가로서 약속한 사항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적절한 주의의무를 다하여 전문서비스의 제공을 계획 관리 하고 완료하여야 한다.

제2장 행 동 규 범

제1조 (갑)과의 관계 정립

제1.1조 (을)이 (갑)에게 제공하여야 할 서비스는 (을)과 (갑)이 상호 합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 되는 경우에는 (을)이 업무수행계약을 맺기 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1) (갑)의 목표, 필요 및 우선순위를 정의하는 것과 관련하여 계약 당사자 별 의무와 책임
 - ① 적절한 자료의 수집 및 제공
 - ② (갑)의 현행 자산운용방식에 대한 결과의 검토
 - ③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수립
 - ④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실행 책임
 - ⑤ 재무설계 제안사항의 모니터링 책임
- 2) 계약당사자 또는 계약당사자의 관계자가 업무수행계약에 따라 받게 되는 보수
 - ① (갑)이 부담하게 될 비용을 결정짓는 요소 또는 조건
 - ② (을)에 대한 이익의 종류와 규모 등
- 3) (을)이 공급하는 상품을 이용하는 조건
- 4) (을)이 업무수행계약서의 의무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다른 전문가의 도움을 받게 되는 조건
- 5) (을)과 (갑) 간의 계약관계를 해지하는 절차
- 6) (을)에 대한 (갑)의 불만 및 불평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

제1.3조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 되는 경우에는 (을) 또는 (을)의 고용주 또는 소속기관(이하 "소속회사" 라 한다)은 재무설계 서비스와 관련하여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명시 되어야 한다.

- 1) 계약 당사자
- 2) 계약일 및 계약기간
- 3) 계약종료 방법 및 조건
- 4) 계약상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제1.4조 (을)은 언제나 (갑)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2조 (갑)에게 제공해야 할 정보

제2.1조 (을)은 자신의 자격 또는 제공서비스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때에는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정보를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 (을)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통해 (갑)이 받게 될 혜택에 대하여 (갑) 또는 다른 이에게 오해를 초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 (을)은 (갑) 또는 잠재 (갑)에게 오해를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2.4조 (을)은 제공하는 서비스에 재무설계 또는 재무설계 업무수행과정의 중요한 요소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다음의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1) (갑)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수체계를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기술한 설명서. 이 설명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① (갑)이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과 함께 (을) 또는 (을)의 소속회사가 받게 되는 보수의 일반적인 형태 및 출처

② 전항의 보수의 출처 이외에 (을) 또는 (을)의 소속회사가 받게 될 추가 보수의 발생근거 및 출처와 산출근거

2) (갑)과 (을), 또는 (갑)과 (을)의 소속회사 및 관계자나 제3자와의 관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이해상충을 전반적으로 기술한 요약서.(여기에는 (을) 또는 (을)의 소속회사의 가족관계,계약관계 또는 대리인관계 중 (갑)과의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갑)이 (을)과의 업무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합리적으로 예상되는 (을) 또는 (을)의 소속회사에 관한 정보

4) (을)의 전문분야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여 (갑)과 (을)의 관계의 범위 및 성격을 파악하기 위하여 (갑)이 합리적으로 알고자 하는 정보

5) (을) 및 (을)의 소속회사의 연락처

위의 정보에 중요한 변경이 있는 경우 (을)은 이를 (갑)에게 적시에 알려야 한다.

제3조 (갑)의 정보와 자산

제3.1조 (을)은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갑)의 정보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1) 법률적 요건이나 절차 또는 규제 당국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

2) (을)의 소속회사 또는 파트너에 대한 의무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경우

3) (을)자신에 대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

4) 민사소송과 관련된 경우

5) (갑)을 위한 전문서비스 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경우

제3.2조 (을)은 (갑)의 정보와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신중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신중한 조치에는 (을)이 관리하는 실물 또는 전자적인 형태로 저장된 모든 정보에 대한 보안이 포함된다.

제3.3조 (을)은 임무완수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야 한다. (을)이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 못하여 중대한 차질이 있을 경우 이를 (갑)에게 알려야 한다.

제3.4조 (을)은 (갑)의 자산을 보관하거나,(갑)으로부터 위임 받은 권한 내에서 투자결정을 내리거나, 자산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자산을 (갑)별로 명확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제3.5조 (을)은 관리 중이거나 (갑)으로부터 운용권한을 위임 받은 (갑)의 자금 및 자산의 현재 현황을 구분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을 유지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제3.6조 (을)은 (갑)의 자산을 (을) 자신이나 (을)의 소속회사나 다른 (갑)의 자산과 공동으로 관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률 또는 (갑)과의 서면계약서에 명확하게 허용된 경우로서 (을)이 (갑)의 자산을 (갑)별로 정확하게 구분하여 기록하고 관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제3.7조 (갑)의 반환요청이 있는 경우 (을)은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기간 또는 (갑)과의 계약서에 명시된 기한 내에 (갑)의 자산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4조 (갑)의 대한 의무

- 제4.1조 (을)은 (갑)을 공정하게 대우하여야 하며, 성실성의 원칙과 객관성의 원칙에 따라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2조 (을)은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대하여 전문능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제4.3조 (을)은 (갑)에게 제공하는 전문서비스에 적용되는 관계당국의 모든 규제 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 제4.4조 (을)은 전문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신중한 판단을 내려야 한다.
- 제4.5조 (을)은 (갑)에게 적합한 제안서만을 작성하고 실행하여야 한다.
- 제4.6조 (을)은 (갑)을 위한 업무수행의 책임을 위임한 직원이나 제3자에 대하여 전문가정신에 따라 합리적이고 신중하게 관리하고 감독하여야 한다.
- 제4.7조 (을)은 부정적, 허위, 사기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위를 하거나, 또는 고의로 허위 또는 오해를 초래하는 언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4.8조 (을)은 자신의 개인적 편견이나 이해관계가 (갑)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제4.9조 (을)은 면밀하고도 시의 적절한 방법으로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4.10조 (을)은 업무수행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수행범위 내에서 (갑)에게 제안하는 금융상품에 대하여 합리적인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을)이 제3자가 수행한 조사결과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조사의 질적 수준을 신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 제4.11조 (을)은 (갑)이 스스로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재무설계서의 제안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는데 필요한 모든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제4.12조 (을)은 재무설계분야의 변화와 발전 내용을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전문능력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장 결 격 사 유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을)이 되지 못한다. 다만, (을)이 된 이후에 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잠정적 자격정지의 대상이 되며 징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을)이 정지되거나 취소된다.

- (1)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2)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거나 금융관련법령에 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그 기간이 경과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6) 음주운전이나 마약물 사용 등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7) 정부기관,업계자율규제기관,금융기관 또는 법률,회계,세무,보험,금융투자,부동산투자 등에 관한 전문서비스법인과 단체(이하“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이라 한다), 또는 기타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탄핵포함)에 따라 그 직에서 파면 또는 해임되거나 그 자격이 취소되거나 제명 또는 등록 취소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8) 정부기관,업계자율규제기관,금융기관,전문직서비스업무수행기관 또는 기타 관련법인 및 단체의 징계처분에 따라 업무정지,자격정지,직무정지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9) 자금유용이나 자산유용의 죄를 범한 혐의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거나 재판 중에 있는 자

년 월 일

갑 주 소 : 충청북도 청원군 옥산면 남촌리 1112-14, 오창과학단지 4-9블록

상 호 : (주)에스엠알 풍정

대표자 : 김재석 외 1

☞

을 주 소

상 호

대표자

☞